

제 호						
야생동물포획허가증						
허가받은자		①성 명			②생년월일	
허 가 사 항	③종 류					
	④수 량					
	⑤목 적		⑥방 법			
	⑦기 간		. . . ~			
	⑧포획구역					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[인]						
<준수사항> 1.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 2. 포획한 야생동물은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지역이 속한 시·군·구 밖으로 반출하거나 가공하여서는 안됩니다. 3. 폭발물·극약·독약 또는 함정 등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. 4.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						

(뒤 쪽)

[illegible]